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078

발의연월일: 2022. 11. 3.

발 의 자:김용판·박덕흠·김학용

권명호 · 엄태영 · 김영식

이주환 · 강대식 · 박성민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존재하게 됨.

이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11제2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 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 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 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1항 을 준용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제66조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조치) ① (생 략)	관리조치)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u>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최·주관</u>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
	제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
	행될 수 있도록 제1항을 준용
	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
	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 2 항 및 제 3 항과
	같음)
<u>④</u>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u>⑤</u> 제4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	
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⑤</u> 제1항부터 <u>제4항</u> 까지의 규	<u>⑥</u> <u>제5항</u>

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